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의안.....2면
-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검토보고서.....54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3. 20.(수)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2.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3.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3월 일
발 의 자 : 김종식,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1. 개정이유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연번	일괄개정조례안 목록	주요 개정 내용	비고
1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셋째아 → 둘째아	
2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셋째아 → 둘째아 최종아 13세 미만 → 18세 미만	
3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 3명 → 2명	
4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5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명 → 2명	
6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셋째 → 둘째	
7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비고1의 라목] 3인 → 2인	

3. 조 례 안 : 불 입

4. 참 고 사 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3. 8. ~ 3. 14.)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주군 조례 제 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2조(「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셋째아”를 “둘째아”로, “13세미만”을 “18세미만”으로 한다.

제3조(「성주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4조(「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5조(「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7조(「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의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라목 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u>셋째아</u>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둘째</u> ----- -----

□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를 3. <u>셋째아</u>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 (최종아 <u>13세미만</u>)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 ----- 3. <u>둘째아</u> ----- ----- <u>18세미만</u> ----- -----

□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18세미만의 자녀가 <u>3명</u> 이상인 다자녀가구 12.·13. (생략) ② (생략)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2명</u> ----- ----- 12.·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만18세미만의 자녀가 <u>3명</u> 이상인 다자녀가구 13.·14. (생략) ② (생략)	제22조(감면 등) ①-----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u>2명</u> ----- ----- 13.·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비용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주민등록법」에 다른 18세 미만 자녀가 <u>3명</u> 이상인 다자녀	제8조(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2명</u> -----

□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8. 11. 8.> 가. ~ 라. (생략) 마.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u>둘째</u> ----- -----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의2)

현 행	개 정 안
<p>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u>3인</u>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p> <p>마. ~ 자. (생략)</p>	<p>1. ----- -----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u>2인</u> ----- -----.</p> <p>마. ~ 자. (현행과 같음)</p>

참고사항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1-다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다자녀가구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정책 과제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18.12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 수정계획 발표('19.2월)후, 2019년도 시행계획부터 신규 검토과제로 ‘다자녀 기준 완화*’ 포함
- *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부터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과제 포함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3월 일
발의자 : 여노연,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장익봉 이화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금액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월 110만원→150만원)
- 나. 제8조 여비지급기준 근거 명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으로 변경)
- 다. 제8조제2항과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2(국외여비지급기준표) 삭제

3. 조 례 안 : 불 임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3. 8. ~ 3. 14.)
-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1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삭제하고, 종전 별표 3을 별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 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 10만으로 한다 지급한다. 다만, 지 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 ----- 150만----- . ----- ----- ----- .</p>																
<p>제4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 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u>별표 3</u>과 같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 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월정수당지급)----- ----- ----- <u>별표</u>----- . ----- ----- ----- .</p>																
<p>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u>국내여비</u>는 <u>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u> <u>하여 지급한다.</u></p> <p>②<u>국외여비</u>는 <u>별표 2의 국외여비지</u> <u>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8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 호에 규정된 <u>별표 6</u>에 따라 「공무원 여 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삭 제></p> <p><삭 제></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철 도 입</th> <th>신 발 입</th> <th>활 용 공 집</th> <th>자 동 차 입</th> <th>현 교 통 비 (1일당)</th> <th>숙 박 비 (1일당)</th> <th>식 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 원</td> <td>1등급</td> <td>2등급여</td> <td>정액</td> <td>정액</td> <td>20,000</td> <td>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td> <td>25,000</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주군의회</u>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성주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승임구분표 중 1등급은 <u>독실</u> 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승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승임을 지급 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용에 따라 이 조리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철 도 입	신 발 입	활 용 공 집	자 동 차 입	현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급여	정액	정액	20,000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구 분	철 도 입	신 발 입	활 용 공 집	자 동 차 입	현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급여	정액	정액	20,000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참고사항	관련 법령
-------------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고

-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3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사회와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

2.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의 운영목적(안 제1조)
- 나.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안 제4조)
- 다. 공영장례의 지원내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완료(4,950천원)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기획예산실-13180(2023.11.13.))
-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성별영향평가분석 완료(가족지원과-52426(2023.11.13.))
- 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주민복지과-3065(2024.2.7.))
 -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가족지원과-6139(2024.2.1.)
의견반영(주민복지과-2875(2024.2.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주군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 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					수수료 없음
<p>○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장례추진 결 과	장례처리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집 행 액 (원)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청구금액	금 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p>「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성주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 				

관련법령 발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제목개정 2015. 1. 28.]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3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정이유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구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조례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가.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총칙(제정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과학관 개관 및 관람(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관람료 면제 및 감경, 관람제한, 행위제한,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제10조)
- 다.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편의시설, 위탁운영,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4조)
- 라. 보칙(준용)에 관한 사항(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 완료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기획예산실-13363(2023.11.16.))
- 라.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분석 완료(가족지원과-53185(2023.11.16.))
- 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가족지원과-4581(2024.1.2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성주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또는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1. 국민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단체 인솔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관련 신분증(또는 증명서)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관람료의 50%를 감경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주취자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악취를 발산하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교체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운영 및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성과반영)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반기별로 제출받아 운영비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 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랑 료 (제6조 관련)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린이	1,000원	500원	6세 ~ 12세, 초등학생
청소년 · 군인	2,000원	1,000원	
성인	3,000원	1,500원	19세 ~ 64세

※ 실험실 재료비 별도(재료에 따라 변동 가능)

관련법령 발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종사자에 관한 임금규정은 ‘2024년도 공무원직근로자 단체(임금)협상’ 및 ‘2024년 최저임금제도’를 준용함.
- 나.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232,924천원

가. 인건비 : 110,014천원

- 팀장(전문직원, 연구원) : 2,330,000원 × 1명 × 10월 = 23,300천원
- 팀원(연구보조원) : 2,090,000원 × 1명 × 10월 = 20,900천원
- 팀원(고객관련업무종사자) : 78,880원 × 2명 × 210일(50주) = 41,018천원
- 기타수당(휴일근무수당, 명절수당, 직책수당 등) : 9,672천원
- 사회보험료 : 10,868천원
- 퇴직적립금 : 4,256천원

나. 운영비 : 97,310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95,31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천원

다. 자산취득비 : 25,600천원

- 사무실 책상 및 의자 등 : 25,6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세입	○세외수입	36,000	36,000	36,000	36,000
소계(a)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세출	○군비	232,924	244,570	256,799	269,639	283,121	1,287,053
	소계(b)	232,924	244,570	256,799	269,639	283,121	1,287,053
□ 총 비용(a-b)		-196,924	-208,570	-220,799	-233,639	-247,121	-1,107,05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32,924	244,570	256,799	269,639	283,121	1,287,053
민간							
기타							
합계		232,924	244,570	256,799	269,639	283,121	1,287,05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232,924		
인건비	기본급	85,218	기본급(다군, 10호봉기준) 2,330,000원 * 1명 * 10월 = 23,300 기본급(나군전문, 5호봉기준) 2,090,000원 * 1명 * 10월 = 20,900 기본급(최저임금, 일급제) 78,880원 * 2명 * 210일 = 33,130 78,800원 * 2명 * 50주 = 7,888	
	제수당	9,672	휴일근무수당 145,263원 * 1명 * 10일 = 1,453 120,000원 * 1명 * 10일 = 1,200 78,880원 * 2명 * 14일 = 2,209 명절수당 1,165,000원 * 1명 * 1회 = 1,165 1,045,000원 * 1명 * 1회 = 1,045 150,000원 * 2명 * 2회 = 600 직책수당 200,000원 * 1명(팀장) * 10월 = 2,000	
	사회보험 부담금	10,868	국민건강보험 96,704,570원 * 3.545% = 3,429 장기요양보험 3,428,200원 * 12.81% = 440 국민연금 96,704,570원 * 4.5% = 4,352 고용보험 96,704,570원 * 1.15% = 1,113 산재보험 96,704,570원 * 1.06% = 739	
	퇴직적립금	4,256	퇴직적립금 4,255,219원 * 1회 = 4,256	
	소 계	110,014		
	운영비	사무관리비	32,710	사무용품구입비, 복사기임차료, 홍보물제작 등 32,710
공공운영비		62,600	건물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62,600	
행사운영비		2,000	방학특별프로그램운영 2,000	
소 계		97,310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5,600	사무실책상및의자, 파티션, 냉장고 등 25,600	
	소 계	25,600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3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등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화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나. 자원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5조)
- 다. 자원화센터의 사용료(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상품 농산물 구매대금 및 운영비 등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농정과-3068(2024.2.8.))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기획예산실-3107(2024.03.11.))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성별영향평가분석 완료(가족지원과-504(2024.1.2.))
 - 4) 비용추계서 : 여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성주참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처리·자원화하여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엄선된 참외만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이라 함은 참외농가에서 생산되는 저급과 참외로서 발효과, 미숙과, 부패과, 파손과 등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매카드”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 자조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농가가 발급받는 카드로서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기 위한 편의카드를 말한다.
4. “수매”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을 거두는 일을 말한다.
5. “계근대”라 함은 참외농가가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는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또는 장치)을 말한다.
6. “공차중량”이라 함은 저급과 참외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 시키고 저급과 참외를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

여 산술한 값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65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자원화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의 반입·수매·처리
2.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

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시 소요되는 운영비, 유지비 등 소요되는 예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성주 참외재배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자원화센터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화센터의 운영자 선정,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2. 기타 자원화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결정
3. 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화센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5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자 선정)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원화센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운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운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원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운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자원화센터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4조(자원화센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성주참외의 명성유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원상복구) ① 운영자는 자원화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원화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군수가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등의 보수, 수리비용 발생 시 군수와 협의한다.

제17조(업무규정 작성 비치 등)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자원화센터의 운영 실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자원화센터의 시설관리
2. 자원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자원화센터의 운영 상황(회계처리 상황, 운영자금 정산) 조사 및 지도 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액비의 사용)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수도작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제20조(자원화센터의 이용) ① 자원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군수에게 수매카드를 신청·발급하여야 한다. 수매카드는 비상품 농산물의 수매 및 맞춤형 액비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차량 반입 시 입차 계근대를 통과하여 1차 계량을 실시하고 반입동에서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하고 공차중량을 계상하기 위해 출차 계근대를 통과하여 2차 계근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매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수매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자원화센터 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매대금 지급) ① 비상품 농산물 수매에 따른 수매대금은 이용자(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매가격은 예산,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와 성주군의 회의를 거쳐 수매가격을 결정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한다.

제22조(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장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휴일 및 특정 공휴일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비상품 농산물의 대폭 반입으로 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4. 자원화센터의 안전 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자원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정과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사용신청서

단체(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사용신청내용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일체		
비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무소 :

대표자 성명 : (인)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성 주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사용허가서							
법인·단체	명 칭				법 인 번 호		
	소 재 지	성주군	읍·면·동	리	번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재산의표시	시 설 명						
	부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m ²)		
	건 물	구 조	면적(m ²)	용 도			
	시설·기계 장비	구 분	단 위	수 량	구 분	단 위	수 량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 타							
<p>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성 주 군 수 인</p>							

▣ 관계 법령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2022.12.08 조례 제2461호

제5조 (고품질 참외 출하) ①군수는 고품질 참외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출하하는 참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 1. 발효과·속박이 유통근절
- 2. 정량·정품 출하
-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개정 2011.12.29>
- 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①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 2. 발효과·속박이 출하 근절
-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등
- 4.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신설 2011.12.29>
- 5. 참외덩굴 소각근절<신설 2011.12.29>
- 6.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신설 2011.12.29>
- 7.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신설 2011.12.29>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 1. 1회 위반 시 :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 2. 2회 위반 시 :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 3. 3회 위반 시 :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1회로 본다.<신설 2011.12.29>

④ 제2항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에게, 농업인인 때에는 그 세대원에게 연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⑤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1.12.29>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매비, 운영비의 예산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2,400,000천원 (도비 300,000, 군비 2,100,000)

가. 자원화센터 수매비 : 1,600,000천원

- 수매비 : 160원/kg x 10,000톤 = 1,600,000천원

나. 자원화센터 운영비 : 800,000천원

- 인 건 비 : 3,392천원 x 14명 x 8월 = 379,904천원

- 액비살포비 : 30,000천원

- 우드칩, 톱밥구입 : 30,600천원

- 장비유지비 : 140,000천원

- 전 기 료 : 80,400천원

- 기 타 비 : 139,096천원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도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군비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합계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4. 작성자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2,400,000		
수매비	수매비	1,600,000	160원/kg * 10,000톤 = 1,600,000	
	소계	1,600,000		
운영비	인건비	379,904	3,392천원 * 14명 * 8개월 = 379,904	
	액비살포비	30,000	300천원/ha * 100ha = 30,000	
	우드칩, 톱밥구입	30,600	1,800천원 * 17대 = 30,600	
	장비유지비	140,000	퇴비반출 : 8,000천원 * 10회 = 80,000 장비유지 : 4,000천원 * 12개월 = 48,000 장비유류 : 1,000 * 12개월 = 12,000	
	전기료	80,400	6,700천원 * 12개월 = 80,400	
	기타비	139,096	홍보 : 1,000천원 * 10회 = 10,000 물품구입비 : 2,500천원 * 12개월 = 30,000 제세금 등 : 99,096	
	소계	800,000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3. 20.(수)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연번	일괄개정조례안 목록	주요 개정 내용	비고
1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셋째아 → 둘째아	
2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셋째아 → 둘째아 최종아 13세 미만 → 18세 미만	
3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 3명 → 2명	
4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5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명 → 2명	
6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셋째 → 둘째	
7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비교1의 라목] 3인 → 2인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3. 8. ~ 3. 14.)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 군도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월 110만원→150만원)
- 나. 제8조 여비지급기준 근거 명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으로 변경)
- 다. 제8조제2항과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2(국외여비지급기준표) 삭제

3.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3. 8. ~ 3. 14.)
-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의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와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

2.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의 운영목적(안 제1조)
- 나.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안 제4조)
- 다. 공영장례의 지원내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완료(4,950천원)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기획예산실-13180(2023.11.13.))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성별영향평가분석 완료(가족지원과-52426(2023.11.13.))

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가족지원과-3065(2024.2.7.))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가족지원과-6139(2024.2.1.))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구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총칙(제정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과학관 개관 및 관람(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관람료 면제 및 감경, 관람제한, 행위제한,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제10조)
- 다.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편의시설, 위탁운영,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4조)
- 라. 보칙(준용)에 관한 사항(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 완료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완료(기획예산실-13363(2023.11.16.))
- 라.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분석완료(가족지원과-53185(2023.11.16.))
- 마. 입법예고 : 입법예고완료(가족지원과-4581(2024.1.24.))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와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과학적 사고와 탐구심은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어린이들은 체험관을 이용하기 용이하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 개관하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화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나. 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안 제5조)
- 다. 자원화센터의 사용료(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상품 농산물 수매대금 및 운영비 등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완료(농정과-3068(2024.2.8.))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기획예산실-3107(2024.03.11.))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성별영향평가분석 완료(가족지원과-504(2024.1.2.))
 - 4) 비용추계서 : 여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고품질 성주참외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기능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만,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시 기계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